

# 2022년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신규과제 제안요청서(RFP)

<2021.12.07.>

## □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지원사업’ 제안요청서(RFP)

**< 알 린 >**  
 동 RFP는 RFP 사전공시 제도에 따라 연구자분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초기 RFP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세부사업명)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지원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	공모 유형	자유공모형	기술료 납부대상	X
사업유형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경쟁형 R&D, <input type="checkbox"/>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기획시 참조사항	○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거나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의사의 연구 참여 기회를 지원하여 의사과학자로 유입				

### ▶ 지원목적

- 임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신진의사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마련 및 육성 지원

###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병 모두 가능
- 국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지원분야	지원대상 요건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지원 (디딤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과학 융합연구에 관심이 있는 의사면허 소지자(M.D.)로 연구책임자 수행경험이 없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 지원자</li> </ul>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지원 (심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면허와 박사학위를 모두 소지한 M.D.-Ph.D.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수행경험이 있는 자</li> <li>※ 신진의사과학자 양성 취지에 따라 조교수급 이하 권장</li> </ul>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1차년도)	협약 형태	선정 예정 과제수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지원 (디딤돌 지원)	1년 9개월 이내	100백만원 이내	다년도	16개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지원 (심화 지원)	1년 6개월 이내	200백만원 이내	다년도	12개

- ※ ‘디딤돌 지원’ 1차년도 연구기간 9개월 이내, 연구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
- ※ ‘심화 지원’ 1차년도 연구기간 6개월 이내, 연구비는 6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
-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예시)

지원분야	성과목표	지원내용(예시)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지원 (디딤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계획서 내 연구자 제시 목표</li> <li>※ (예시) SCI(E)논문 1편, 국내/외 학회 구두발표, 특허 출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의과학·의생명(기초-임상) 분야의 창의적인 융합연구 수행</li> <li>임상연구 혹은 진료현장에서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임상적용 가능성을 가지는 기 확보된 가설(관찰, 현상 등)에 대해 실험적으로 접근하여 원리 규명 및 임상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 등</li> </ul>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지원 (심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성과목표 중 하나 이상 달성</li> <li>후속연구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 또는 기업체와 공동연구계약서 등)</li> <li>SCI(E)논문 1편</li> <li>실용화 성과 1건 (품목허가, 기술이전, 임상시험승인, 신의료기술인증, 특허등록 등)</li> </ul>	

※ 연구내용과 관련없는 성과(논문, 특허 등)를 제출할 경우 최종평가 시 성과로 불인정함

※ 논문 및 특허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연구개시 6개월 이후 게재 신청 또는 출원된 실적만 인정, Review논문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 특기사항

- 디딤돌 지원사업 및 심화 지원사업 모두 단독과제로 구성하되 위탁과제는 구성불가
- 연구인력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재 우수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배분을 고려한 과제선정 예정 (비수도권은 선정과제의 30% 이내로 우선 선발)
- 과제 수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지원의지(기관협약서 등) 제시 필요
  - 연구책임자의 연구시간 보장을 위한 진료시간 경감
  - 디딤돌 지원 분야의 경우 연구환경 지원을 위한 멘토\* 지정
    - \* 멘토는 디딤돌 지원 연구자의 연구기반 지원 및 과제수행 관련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 지정
- 연구책임자는 총인건비 계상율 100%한도 내에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는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준용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적용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사업', '혁신형의사과학자 공동연구지원' 등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선행 사업 수행 경험자의 경우, 사업 지원 시 가점(0.5점) 적용(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 향후 '디딤돌 지원' 연구책임자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자(10%)는 '심화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시 가점(0.5점) 적용
- 최종평가는 과제지원 종료 이후 1년간의 성과등록 기간을 거친 후 실시(단, 최종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

▶ 선정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서면·구두 평가	1. 연구개발 계획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요청서(RFP)의 목표와 지원내용에 부합함</li> <li>-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li> </ul> </li> <li>○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함</li> <li>-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li> </ul> </li> <li>○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li> </ul> </li> <li>○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함</li> <li>- 연구 추진전략,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li> </ul> </li> <li>○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임</li> </ul> </li> </ul>
	2. 연구개발 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li> </ul> </li> <li>○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 능력의 우수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li> </ul> </li> </ul>
	3. 연구개발 성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성공가능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음</li> <li>-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및 확산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li> </ul> </li> <li>○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 질병극복,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li> </ul> </li> </ul>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